

case
9

대나무 선반 패널

요약

사례명	대나무 선반 패널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4280 (2025.10.21.)
사실관계	중국에서 제작한 대나무 블랭크 데크와 말레이시아산 금속 나사 인서트를 베트남으로 수출한 후, 베트남에서 현지 조달된 재료들과 함께 절단, 연마, 코팅 등의 조립 공정을 수행하여 대나무 선반 패널 생산
쟁점 및 판정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베트남에서의 제조 및 조립 공정을 통해 중국산 및 말레이시아산 개별 부품들이 대나무 선반 패널로서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지게 되므로 해당 공정이 수행된 베트남을 원산지로 판정함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판정사례⁹⁾

사 례 명 [대나무 선반 패널]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54280 (2025.10.21.)

사실관계

요청자	Forest Products Distributors	
제품	제품명	• 대나무 선반 패널 (품목번호: BAMB30125MI)
	구성	• 대나무 블랭크 데크 (중국산) • 금속 나사 인서트 (말레이시아산)
	용도	• 컴퓨터 모니터 받침대, 책장 구성품 및 기타 가구용
	완제품 HTSUS	• 9403.99.2080

제조과정



상세공정

1. 중국에서 대나무 블랭크 데크 제작
 - (1) 대나무 줄기 수확
 - (2) 대나무 줄기를 얇은 조각으로 절단 후 가압실에서 건조하고 품질 및 색상별 분류
 - (3) 대나무 조각 압착 및 접착하여 얇은 패널 제작
 - (4) 여러 얇은 패널을 압착 및 접착하여 더 커다란 대나무 블랭크 데크 제작
2. 중국산 대나무 데크, 말레이시아산 금속 나사 인서트 베트남으로 선적 및 수출
3. 베트남에서 폴리우레탄 목재 실러, 목재 스테인, 접착제, 에폭시 수지, 포장재 현지 조달
4. 베트남에서 미완성·미조립·미마감 상태 목재 가구 부품으로 제작
 - (1) 중국산 대형 대나무 블랭크 데크 하나를 컴퓨터 수치 제어 기계(CNC)를 사용하여 여러 선반 부품으로 치수 절단, 성형, 연마, 옛지 프로파일링

9) 해당 HS Code에 따른 대미 수출량이 미미하여 품목 개요 미제공

- (2) CNC 기계로 6개의 구멍을 뚫고 금속 나사 인서트 설치
 - (3) 대나무 패널 선반 모서리와 가장자리를 수작업으로 연마
 - (4) 대나무 패널 선반의 앞면과 뒷면 검사 후 추가 연마로 결함 제거
 - (5) 자외선 폴리우레탄 목재 실러 분사 후 대나무 패널 선반 공기 건조
 - (6) 대나무 패널 선반 앞면과 뒷면에 갈색, 진한 갈색, 또는 검정색 착색 코팅 도포
 - (7) 대나무 패널 선반 앞면과 뒷면에 최종 폴리우레탄 탑코트 도포
 - (8) 도포 불량이나 기포가 발견될 경우 수리 및 추가 폴리우레탄 도포
5. 세척, 포장, 라벨링 후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판정 결과

- ☑ 중국산 및 말레이시아산 개별 부품들은 베트남에서의 제조 및 조립 과정에서 정체성을 잃고 완성된 목재 가구 선반 패널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갖게 되므로 대나무 선반 패널의 원산지는 베트남임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대나무 선반 패널의 원산지는 베트남임

II 시사점

- 블랭크 데크는 그 자체로 선반 용도의 패널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반가공품을 가공하여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한 경우 실질적 변형을 인정받을 수 있음

Ⅲ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4280 (2025.10.21.), <https://rulings.cbp.gov/ruling/N354280>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